

## 대외협력위원회규정

제정 2009. 03. 12.

제3차 개정 2019. 08. 2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와 대외 기관의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설치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6.12.22., 2018.01.23)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외 기관과의 교류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(개정 2016.12.22., 2018.01.23)
2. 대외 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대외 교류업무 및 총장이 지시하는 관련 업무(개정 2016.12.22., 2018.01.23)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9.08.21.)

②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은 대외협력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6.12.22., 2019.08.21)

**제4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**제5조(보고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관계부서의 협조)** 위원회는 교직원 및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행정지원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교직원 및 관계부서에서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8조(경비지급)**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소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6.12.22., 2018.01.23)

**제9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 (개정 2018.01.23.)

### 부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870, 2016.12.22)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43, 2018.01.23)

이 규정은 2018년 0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428, 2019.08.21)  
이 규정은 2019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